

[사 건 명] 행심 2014-7

학교폭력 가해에 따른 행정처분 취소 청구

청구인 : ○○○

피청구인 : ○○고등학교장

[주 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4.04.16. 청구인에 대하여 한 학교폭력 가해에 따른 『학교에서의 봉사 등』 행정처분을 취소한다.

[재결이유]

I. 사건개요

- 가. 청구인은 2014. 4. 2. 점심시간에 식사 중이던 피해학생 ○○○의 테이블을 툭툭 치며 풀어야 할 오해가 있으니 이야기하자고 하였다.
- 나. 2014. 4. 2. 12:30경 피해학생 ○○○에게 평소 청구인의 얘기를 좋지 않게 하고 다닌다면서 “아~ 씨발” 등의 언어폭력을 행사하였다.
- 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생활지도부 선생님은 모여 있는 학생들을 해산시켰으나, 청구인과 청구 외 ○○○은 위 사건을 동영상 촬영한 학생이 있음을 알게 되었고, 동영상 촬영한 학생에게 신체 접촉과, 언어폭력을 행사하였다.
- 라. ○○고등학교에서는 2014. 4. 14.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개최하여 청구인과 ○○○에게 학교에서의 봉사 3일(1일 4시간), 특별교육이수(1일 5시간 학부모 특별교육 병행)조치를 취하기로 심의·의결하였다.

마. 청구인은 2014. 4. 16. 피청구인으로부터 학교에서의 봉사 3일(1일 4시간), 특별교육이수(1일 5시간 학부모 특별교육 병행)이라는 이 사건 처분을 통보받았다.

바. 청구인은 2014. 4. 22.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II.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피해학생 ○○○ 등이 먼저 청구인을 헐담하고 다니므로 대화를 시도하면서 “아~ 씨발” 이라고 했을 뿐이고, 욕을 하지 않았으며, 청구인 등 가해학생의 학부모는 이미 피해학생 측에서 고소를 한 상태인 사건발생 6일이 지나서야 학교로부터 연락을 받아 피해학생 측과 원만한 합의를 하지 못한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고 위법하다.

나. 청구인등 가해학생들은 한결같이 진술이 거짓 없음을 주장하고 있는데도, 피청구인은 진술서를 4~5회 작성하게 한 것은 피해학생측이 고소를 하고 학교에 와서 행패를 부리니까 겁이 나서 피해학생의 진술서를 보고 짜 맞추기 하려고 진술서를 여러 번 작성하게 한 것이다.

다. 피청구인은 피해학생 측에서 학교에 3회나 방문해 징계위원회를 조속히 열지 않는 것에 대한 항의와 경찰고소로 인해 속전속결로 징계절차에 들어간 것이고, 청구인에게 억울한 처분을 한 피청구인은 아이들의 인생을 키워줘야 할 학교에서 오히려 학생을 망가지게 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Ⅲ.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 가. 청구인이 혼잣말로 욕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목격한 학생들의 진술이 있었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는 “학교폭력”을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정의하였으며, 교육부의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에서 언어폭력이란 다른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상대방 학생에게 언어적 공격이나 욕설, 협박 등을 한 경우로 모욕죄에 해당하는 폭력이 된다고 정의되어 있고, 이에 따를 경우 욕설은 분명 언어폭력이고, 학교폭력에 해당되는 사항인 것이다.
- 나. 청구인은 학교폭력사실을 피해학생측이 고소한 후에 알게 되어서 합의를 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3학년 부장은 당일 학생들에게 이 사건에 대해서 학부모님께 전달할 것을 당부하고, 청구인을 통해서 부모님께 전달한 사실을 재차 확인하였으며, 경찰 고소는 청구인 부가 학교를 방문하였으나, 별일 아니라고 하면서 돌아간 날 이후 저녁 피해학생측이 한 것이다.
- 다. 청구인은 가해학생들에게 진술서를 여러 차례 받은 이유가 피해학생측이 학교에 와서 행패를 부리니 겁이 나서 피해학생의 진술과 짜 맞추려고 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청구인의 경우 1~3회까지는 피해학생과 같은 시간에 작성했고, 4회는 소정의 양식에 의거 작성한 것이며, 5회는 피해학생들이 작성한 사건 상황과 달리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지 않아 구체적으로 쓰게 한 것이니 피해학생의 진술서와 맞추기 위해 여러 번 진술서를 작성하게 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피해학생측이 학교에 와서 행패를 부린 사실도 없다.

- 라. 피해학생이 사건 발생 다음날 전치 2주 상해진단서를 제출했기에 객관적으로 신체·재산·정신적 피해 증거가 없어야 가능한 담임 자체 종결 사안이 아니었으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회부해야 할 사안이었다. 또한 학교의 사안처리 절차와는 별도로 피해학생 측에서 경찰에 고소하였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사건인지 후 14일 이내에 개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피청구인은 관련규정에 의거 절차를 밟은 것이지 피해학생측의 항의와 고소로 인해 속전속결로 징계처분한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 마. 청구인에게 한 제3호 조치인 학교에서의 봉사란 단순한 훈육적 차원이 아니라 봉사의 진정한 의미를 알고 학생 스스로 잘못을 깨달을 수 있도록 선도적, 교육적 차원에서 실시하는 것이고, 학습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여 최대한 학생이 공부하는데 지장을 받지 않도록 배려하고 있다.
- 바.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IV.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1. 관계법령

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6조, 제17조

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2. 판 단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서와 증빙자료, 피청구인이 제출한 답변서 및 증빙자료 등의 기재내용을 보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가.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에 의하면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이며,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에게 대하여 경멸의 의사를 표시하는 것이다.
- 나. 청구인은 피해학생 ○○○ 등이 먼저 청구인을 헐담하고 다니므로 대화를 시도하면서 “아~ 씨발” 이라고 했을 뿐이고, 욕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회의록, 목격자 진술서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피해학생에게 “야~ 씨발년아. 너 내 욕하고 다녔냐?” 등의 욕설을 한 사실은 인정되며, 이것은 언어폭력이며, 모욕에 해당하는 것으로 ‘학교폭력’인 것이다.
- 다. 또한 청구인은 피해학생들에게 신체적 폭력을 가하지는 않았다고는 하나, 이 사건의 발단이 청구인이었고 자치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피해학생은 많은 학생들이 있는 곳에서 청구인에게 당한 일로 모욕감과 수치심을 느끼며, 정신적인 고통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아 피청구인의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 라. 청구인 등 가해학생들은 한결같이 진술이 거짓 없음을 주장하고 있는데도, 피청구인은 진술서를 4~5회 작성하게 한 것은 피해학생의 진술서를 보고 짜 맞추기 하려고 진술서를 여러 번 작성하게 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청구인의 경우 1~3회까지는 피해학생과 같은 시간에 작성했고, 4회는 소정의 양식에 의거 작성한 것이며, 5회는 피해학생들의 작성한 사건 상황과 달리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지 않아 구체적으로 쓰게 한 것으로 보여 지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마. 청구인은 학교폭력 사건을 피청구인이 가해학생 측 부모에게 늦게 알려 원만한 합의를 하지 못했고, 피해학생 측의 항의와 경찰고소로 인해 속전속결로 징계절차에 들어간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펴보건대, 3학년 부장은 학생들이게 이 사건에 대해 학부모님께 전달할 것을 당부하고, 청구인을 통해서 부모님께 전달한 사실을 재차 확인 하였으며, 학교폭력 사건인지 후 14일 이내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는 관련규정에 의거 절차를 밟게 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에 절차상의 하자는 없다고 할 것이다.

V.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